

## 감염관리실 구성장비 세부기준(제24조 관련)

### 1. 감염관리실 구성장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

가. 장비보관함은 다음과 같이 설치해야 한다.

- 1) 들것, 부목 등 각종 장비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.
- 2) 내부에는 구급장비의 세척 및 소독 후 남아있는 습기를 원활하게 제거할 수 있는 물받이, 열풍히터 등을 구비해야 한다.
- 3) 장비를 효과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장비고정대를 설치해야 한다.
- 4) 녹을 방지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구성해야 한다.
- 5) 도어는 유리 재질로 내부 구성품 식별이 가능해야 하며, 한 손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.

나.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공기살균기는 다음과 같이 설치해야 한다.

- 1) 감염관리실 내부에 매립형으로 설치하되, 자동으로 가동 및 정지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.
- 2) 플라즈마 등의 방법으로 각종 바이러스, 세균, 악취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.
- 3) 제조업체의 권장 사항에 따라 적정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.

다. 플라즈마 멸균기는 다음과 같이 구비해야 한다.

- 1)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구급 물품 또는 기구를 충분히 멸균할 수 있어야 한다.
- 2) 멸균하려는 대상에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.
- 3) 플라즈마 멸균기 용량은 최소 30 L 이상이어야 한다.

라. 냉장고는 냉동 기능이 있고 용량 80 L 이상의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.

마. 냉난방기는 다음과 같이 설치해야 한다.

- 1) 감염관리실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부 매립형 냉난방기를 설치해야 한다.
- 2) 사용자의 설정에 의해 자동으로 작동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.
- 3) 감염관리실의 규모에 맞는 용량의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.
- 4) 실외기는 감염관리실 외부의 적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우천에 대

비해 보호케이스를 설치해야 한다.

5) 제조업체의 권장 사항에 따라 정기 점검 및 필터 교체, 청소 등을 시행해야 한다.

바. 의약품 냉·온장고는 다음과 같이 구비해야 한다.

1) 냉장과 온장 기능을 각각 갖춘 일체형으로 내부에 상하 또는 좌우 선반이 있어야 한다.

2) 내·외부 온도 등 설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야 한다.

3) 온도 급상승·급강하 경보 기능과, 과열·과냉 및 정전 방지 등의 안전 장치가 있어야 한다.

4) 구급의약품 보관에 지장이 없는 용량으로 설치해야 한다.

사. 세탁기는 대원의 피복 등을 세탁할 수 있는 기능과 용량을 갖추어 구비해야 한다.

아. 건조기는 대원의 피복 등을 건조할 수 있는 기능과 용량을 갖추어 구비해야 한다.

자. 진공 청소기는 HEPA필터가 장착된 것으로 구비하며 제조 업체 권장사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.

차. 손소독제는 감염관리실 입구 부근에 배치하여야 한다.

카. 손 씻기 후 물기 제거를 위해 손 건조기 또는 페이퍼 타올을 설치해야 한다.

타. 이동식 소독기는 구급차 및 감염관리실 등 표면 소독 후 보완적 소독을 위해 구비 할 수 있다.

1) 휴대 및 보관이 쉬운 크기여야 한다.

2) 가능한 소독제를 분무·분사하는 방식은 지양한다. 단, 부득이하게 사용 시에는 개인보호구를 적절히 착용하며, 소독 후 충분한 환기를 거친 뒤 해당 공간을 사용해야 한다.

파. 방역게이트는 외부 유해물질 제거 등의 목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1) 입구 주변에 설치하여 출입 시 작동해야 한다.

2) 가능한 소독제를 인체에 직접적으로 분무·분사하는 방식은 지양한다.

3) 방역게이트는 에어커튼 작동시 상호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.

하. 에어커튼은 다음과 같이 설치할 수 있다.

- 1) 감염관리실 내부에 완전히 진입하기 전에 오염이 제거될 수 있도록 입구 주변에 설치하며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한다.
- 2) 외부의 먼지나 오염된 공기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.

거. 자외선 소독기는 구조·구급대원 소지 물품의 보완적 소독을 위해 설치할 수 있다.